

부록 6-나-2  
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  
(인도네시아)

주해

인도네시아의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약속의 양허표는 다음을 규정한다.

1. 인도네시아의 자연인의 범주에 대한 약속과 부속서 6-나의 제7항에 따른 체류 기간을 포함한 입국 및 일시 체류를 위한 각각의 조건 및 제한
2. 이 부록은 부속서 6-나에 비추어 해석된다. 이 부록에 명시된 범주에 해당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은 인도네시아의 적용 가능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인도네시아에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된다.
3. 부속서 6-마에 명시된 분야와 관련하여 입국 및 체류가 허용된 범주에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인 경우,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, 이 부록의 각 범주에 명시된 모든 조건 및 제한이 적용된다.
4. 다음의 약속의 양허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시 입국과 체류가 자연인에게 허용된다. 다만, 그 자연인은 적용 가능한 국내 법과 규정에 규정된 서류와 자격을 제시한다.
5. 투명성을 목적으로,
  - 가. 입국과 일시 체류가 허용된 자연인은 이민 그리고 노동법 및 규정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의 국내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.
  - 나.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과 관련된 인도네시아의 약속은 노사분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범주에 대한 설명	조건 및 제한 (체류 기간을 포함한다)
가. 기업 내 전근자	
1) 이사: 서비스 제공기관의 주주에 의하여 기업의 최종 총괄 및 지휘를 위임받고, 법원의 내부 및/또는 외부에서 기업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법적 책임을 가진 하나의 인 또는 인의 단체	<p>체류는 2년까지 허용되며 매회 2년 연장을 조건으로 최대 두 차례 연장될 수 있다.</p> <p>서비스를 공급하는 모든 외국 자연인은 정부에 의하여 부과되는 부과금의 대상이다.</p>
2) 관리자: 조직/부서/하부조직을 주로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, 관리직 또는 전문직 직원에 대한 감독 및 통제 기능을 행사하는 조직 내 자연인이고,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, 주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용인은 포함하지 않는다.	<p>인도네시아의 영역에서 고용된 모든 외국 자연인은 노동부가 발급한 유효한 취업 허가를 소지해야 한다.</p> <p>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, 경제적 수요심사는 모든 분야의 관리자와 기술 전문가에게 적용된다.</p>
3) 기술 전문가/자문가: 1) 구체적인 기술적 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나 거래의 유형에 관한 자격 또는 2) 서비스, 연구설비,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필수적 또는 재산권적 지식을 높은 또는 보통의 수준으로 보유하고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고용된 인	인적자원 또는 인사 기능은 인도네시아인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.
나. 상용 방문자	

범주에 대한 설명	조건 및 제한 (체류 기간을 포함한다)
<p>인도네시아에서 상업적 주재의 설립 준비, 회의 참석 또는 인도네시아 내에서 보수를 받지 않으며 강의를 하는 자를 포함하여 서비스 판매를 위한 교섭을 포함한 사업 회의, 사업 접촉의 참여 및/또는 그 밖의 유사한 활동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인도네시아에 체류하고, 일반대중에 대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연인</p>	<p>입국과 일시 체류는 60 일의 기간 동안 허용되며 최대 120 일까지 연장 가능하다.</p>